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만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12. 12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
과 장 : 이 천 일
사무관 : 김 재 민
전 화 : 500-2068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1년 12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거점도축장 선정

- 전국 32개 업체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개 업체 최종선정 -
- 도축시설 현대화 지원 및 가공·유통까지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"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"(10.11월)에 따라 대한민국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5개 업체를 1차로 선정

※ 거점도축장 : 도드람엘피씨공사, 팜스토리한냉,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,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,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

○ 앞으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거점도축장 선정 추진

◇ 선정된 거점도축장에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·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경영체(팩커)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

- 농림수산식품부는 "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"(10.11월)에 따라 대한민국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5개 업체를 1차로 우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에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5곳은 도드람엘피씨공사(경기 안성 소재), 팜스토리한냉(충북 청원),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(전북 김제),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(경남 김해),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(충북 음성)이다.

- 이번에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·가공·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(팩커, Packer)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,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.

○ 우선, 소비자단체, 생산자단체,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점도축장 선정기준을 마련하고, 공모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였다.

* (선정위원 8인)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,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, 전국한우협회장, 대한양돈협회장,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장,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, 축산기업중앙회장

- 이번 거점도축장 공모에는 전국에서 3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,

○ 지난 10월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과, 시설구조, 경영관리 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개 업체를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.

* (신청업체 32개 시도별 분포) 경기 4, 강원 3, 충북 5, 충남 4, 전북 4, 전남 3, 경북 3, 경남 5, 제주 1

□ 아울러,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는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·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 경영체(팩커)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.

○ 거점도축장 운영주체와 가축사육농가, 유통업체 등과의 공고한 연계를 위해서 각종 정책사업을 거점도축장 위주로 지원하여 거점도축장의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다.

* 도축·가공업체지원, 브랜드경영체지원, 축사시설현대화, 가축계열화,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등 사업예산 3,000억원('11년 기준) 활용

□ 앞으로 거점 도축장은 6개월마다 신청을 받아 전국 20개소 수준으로 선정하며, 선정된 거점 도축장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거점 도축장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.

○ 거점도축장의 선정추이를 보아, 지역별로 도축기반이 필요한 장소에는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도축장인 통합도축장을 선정함으로써, 거점도축장이 도별로 최소 1개소는 분포되도록 지역별 안배도 검토할 계획이다.

<참고자료>

거점 도축장 선정기준

□ (일반원칙) 거점 도축장 신청자격 제한조건 설정

- 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분담금을 미납한 업체
-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업체
- 최근 3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 -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(범죄행위)
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업체

□ (개별기준) 3개 각 분야별 과락제를 적용, 3개 분야의 전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도축장을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

- (서류심사) 일반원칙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대상 해당 여부, 경영관리 분야 과락 해당 여부를 심사, 현지실사 대상 선정
 - 신청자격 제한대상 또는 경영관리 과락인 경우 선정 제외
- (현지실사)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위생수준 및 시설구조 분야를 평가, 점수화하여 과락 해당 여부와 전체 점수 산정
 - ※ 5명이 평가, 최고와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3명 점수의 평균값 적용
- 거점 도축장 선정 시 과락 점수 및 총점 적용
 - (과락제) 위생수준 분야 15점미만(총 30점), 시설구조 분야 15점미만(총 30점), 경영관리 분야 24점미만(총 40점)
 - (총점) 가점을 포함한 전체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

□ (개별기준 세부항목) 위생수준과,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
3개 분야로 구성하고,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계량화

○ 개별기준 세부항목 표

구 분	거점도축장 선정 개별기준	
	세부항목	배점
위생수준 (30)	○ 도축장 공정관리	8
	○ 도축장 위생관리	15
	○ 도축장 미생물 검출수준	7
	소 계	30
시설구조 (30)	○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	10
	○ 도축시설 배치구조	5
	○ 부분육 공정관리	10
	○ 설비투자효율	5
	소 계	30
경영관리 (40)	○ 실질 자본금 규모	10
	○ 전문인력 보유	5
	○ 손익 실적(총자산순이익률)	5
	○ 도축 실적	7
	○ 도축장내 식육처리실적	7
	○ 계약농가 출하실적	3
	○ 판매 능력	3
	소 계	40
계		100
가점 (15)	○ 농가 및 가공업체 등 자본출자	5
	○ 각종 조세 납부실적	3
	○ 도축장 통합 및 사업계획서	7
	소 계	15
총 점		115